



CALIFORNIA HEALTH ADVOCATES

캘리포니아 보건 중재인

저소득층 지원: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s)

메디케어에는 자산 상태가 열악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s - MSPs)이라고 합니다. MSPs는 QMB, SLMB, QI 및 QDWI를 합쳐서 지칭하는 것으로, 각 프로그램의 자격요건과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메디-칼(Medi-Cal – 다른 주의 매디케이드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보건 프로그램)에서 운영합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양쪽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있는가 하면, 한 쪽만 수혜가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250% 장애인 근로자 (California 250% Working Disabled -CWD)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자격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혜자에게 다음 메디케어 비용을 지원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 **주의:** 사회보장 크레딧이 모자라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40 분기 이상 근무하여 충분한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한 해 4분기 기준, 약 10년 간의 정규직 근무). 30-39 분기를 일한 사람의 경우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으며, 월 \$233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30 분기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으나, 더 높은 월 \$423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2008년 기준 월 \$96.40).
- **파트 A 및 파트 B에 대한 공제금액.** 파트 A 공제는 2008년 기준 수혜 기간 당 \$1,024이며, 파트 B 공제는 연간 \$135입니다.
- **파트 A 및 파트 B 공동보험(co-insurance).**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파트 A하에서 QMB라면 61-90 입원일 동안 하루 \$256, 60 예비일 동안은 하루 \$512을 내게 됩니다. 파트 B에서, QMB는 **메디-칼을 받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제공자를 찾는 경우, 의사의 진찰 등 보장되는 외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승인되는 비용 가운데 메디케어에서**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4-28-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부담하는 80%를 제하고 남는 20%의 공동보험료만을 내게 됩니다.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SLMB)

프로그램은 가입 대상자의 파트 B 보험료 (2008년의 경우 월 \$96.40)납부를 지원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보험료는 사회보장수표에서 매달 공제됩니다.)

자격 있는 개인(Qualified Individual, QI)

프로그램은 SLMB 또는 QMB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수입한도를 허용하며 저소득층의 파트 B 보험료 (2008년의 경우 월 \$96.40)납부를 지원합니다.

자격 있는 장애 근로자 (Qualified Disabled Working Individual, QDWI)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를 취득했으나, 직장으로 복직한 후 허용 한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사회보장연금 및 무보험료 파트 A 수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QDWI는 파트 A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으나, 파트 B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250% 장애인 근로자(California 250% Working Disabled, CWD) 프로그램

메디-칼 CWD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장애인이면서, 근로를 하고 있고, 소득이 높아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수입에 비해 적은 월 보험료만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 보험료는 개인 기준 최소 \$20에서 최대 \$250 또는 부부 기준 \$30에서 \$375까지 입니다.

자격 기준으로 가입자는 반드시,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의학적 요구 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사회보장의 수입 및 근로 요구 기준을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를 하여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 자산이 개인 기준 \$2,000, 부부 기준 \$3,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산소득(countable income)이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25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개인 \$2,167/월, 부부 \$2,917/월).

이러한 수입 기준은 MSPs 수혜 자격 요구조건과는 다릅니다. 250% CWD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장애 소득(disability income)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근로자 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캘리포니아 주 장애보험(California State Disability Insurance)은 물론 어떠한 연방, 주, 또는 사설 장애 수당도 본 프로그램의 가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4-28-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주의: CWD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메디케어 수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라고 해서 CWD 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08년도 MSP 가입 기준

- QMB의 경우, 독신자는 월 소득이 \$867 (\$10,40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월 소득이 \$1,167 (\$14,00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SLMB의 경우, 독신자는 월 소득이 \$1,040 (\$12,48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월 소득이 \$1,400 (\$16,80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I의 경우, 독신자는 월 소득이 \$1,170 (\$14,04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월 소득이 \$1,575 (\$18,90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DWI의 경우, 독신자는 월 소득이 \$1,733 (\$20,80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월 소득이 \$2,333 (\$28,000/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 소득 금액에는 \$20의 “무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어떤 소득원으로부터든 \$20까지는 본 수입 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MB, SLMB, QI 및 QDWI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개인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이 개인 기준 \$4,000 또는 결혼한 부부 기준 \$6,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자동차 1대,

세간 및 개인용품, 1인당 액면가 \$1,500의 생명보험증권, 선지급된 장례 플랜(취소 불가능한 경우 무제한, 취소 가능한 경우 \$1,500까지) 및 묘지용 부지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 국한되지는 않는 항목의 가치는 개인자산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령 후 6개월 동안, 소급 적용된 사회보장 또는 SSI 수당 역시 제외됩니다.

MSP 가입

QMB, SLMB, QI 또는 QDWI에 가입하려면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 가입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미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에 가입된 상태라면 거주지 근처의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사무소에서 QMB, SLMB, QI, QDWI 또는 메디-칼 CWD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하십시오.

메디케어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지역 사회보장사무소(SSA)를 통해 파트 B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800-772-1213). 그러나, 파트 A는 일정한 가입 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QMB 프로그램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다음 예를 봐 주십시오.

예 1. 만약 이제 막 메디케어에 가입이 가능해졌고 현재 최초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 자격 취득월 이전 3개월을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4-28-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시작으로 자격 취득월 이후 3개월까지 7개월 동안의 기간)인 경우, QMB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 DSS 사무소를 통해), 최초 가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트 A와 B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SSA, 1-800-772-1213).

권리와 선택 가능한 건강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800-434-0222**로 전화 주시면 가장 가까운 HICAP 사무소에 면담 일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 2. 만약 파트 B에는 이미 가입되어 있고, 파트 A에는 가입 가능하지만 가입하지는 않은 경우, 메디케어 일반 가입 기간, 즉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QMB 프로그램(지역 DSS 사무소를 통해)과 파트 A (SSA, 1-800-772-1213)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A에는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가입이란 QMB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파트 A 가입을 원한다는 뜻으로, QMB 프로그램에서 파트 A 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무조건부 가입이란 QMB 프로그램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파트 A 가입을 원한다는 뜻으로, 이 경우 파트 A 월 보험료를 가입자가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

본 개황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 결정을 여기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특정 상황에 대해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지역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HICAP)에 전화 주십시오. HICAP에서는 객관적 정보 및 메디케어 측과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가입자가 자신의 특정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4-28-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